

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
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윤영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물놀이 등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평등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존수영교육 시행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-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, 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,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, 이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」를 2019년 1월 3일에 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수영장 시설의 지원 및 행정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관내 초등학교 중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가 없어 자체적 시설로는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 수영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